

##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임용, 그 잠정적인 지위 및 운용 등에 관한 특별규정 시행세칙

제 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임용, 그 잠정적인 지위 및 운용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특임규정”이라고 한다)이 법학전문대학원설립추진위원회에 위임한 각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교원종류의 구분기준) 특임규정 제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실무특임교원(이하 “특임교원”이라 한다)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중심교원(TL형)과 실무중심교원(PL형)의 비율
2. 담당전공영역의 필요성
3. 특임교원 본인의 의사
4. 기타 특임교원이 교원의 종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속 대학(원) 전공교수의견, 연구실적, 강의평가실적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한다.

제 3조(기준학위) 특임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임교원의 직위와 직급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학력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단, 최종학위의 전공이 법학이 아닌 경우에 그 학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국내외의 공인된 대학교 학부과정(또는 법과대학) 법학사학위
2. 국내외의 공인된 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 및 법학박사학위

제 4조(학력의 인정) ① 제3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학력 및 학위는 법학석사학위로 인정한다. 다만, 국내 특수대학원의 법학석사 및 기타학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사법대학원 및 사법연수원의 수료
  2. 미국의 공인된 로스쿨 JD학위 및 LLM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
- ② 제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인된 로스쿨 SJD학위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는 법학박사학위로 인정한다.

제 5조(교육경력의 산정) 특임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임교원의 직위와 직급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교육경력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국내 4년제 법학과의 법학전공교원경력 : 100%
2. 사법연수원교수경력 : 100%
3. 국내 4년제 법학과 이외의 법학전공교원 경력 : 50%
4. 국내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및 특수대학원의 비(非)법학전공교원경력 : 30%

제 6조(실무경력의 환산 등) ① 제5조 소정의 교육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임교원의 실무경력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경력으로 환산한다.

1. 한국 및 외국의 판사 및 검사의 경력 : 80%
  2. 한국 변호사자격소지자의 변호사경력 : 8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 70%
  4. 외국 변호사자격소지자의 변호사경력 : 70%
  5. 국제기구의 전문위원 이상의 근무경력 : 60%
  6. 국내외의 공인된 NGO 및 유수언론기관 상임이사 및 상임논설위원 이상의 근무경력 : 60%
- ② 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제 7조(직위 등) ① 특임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임교원의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 특임교원의 최종학위가 법학사인 경우, 그 직위는 교육경력(이하 교육경력에는 위 제6조에 의거하여 환산된 교육경력도 포함한다)이 19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교수로, 13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교수로,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조교수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임강사로 각각 정한다.

② 특임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임교원의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 특임교원의 최종학위가 법학석사 또는 위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학석사학위 인정자인 경우, 그 직위는 교육경력이 16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교수로,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교수로,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조교수로, 7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임강사로 각각 정한다.

③ 특임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임교원의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 특임교원의 최종학위가 법학박사 또는 위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학박사학위 인정자인 경우, 그 직위는 교육경력이 14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교수로, 8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교수로,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조교수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임강사로 각각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가 없는 특임교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시에 한하여 정교수의 직위를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8조(임용기간 및 승진) ① 특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전임강사 2년, 조교수는 3년, 부교수는 6년으로 하고, 임용기간이 경과한 후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심사과정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정교수는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정교수의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박사학위가 없는 특임교원에 대해서는 임용 직후 재계약시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임교원의 승진은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심사과정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여부를 결정한다.

제 9조(재직기간) ① 특임교원의 재직기간은 임용이 후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특임교원이 타대학교 법학전공교원인 경우에는 전적 대학교의 재직기간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제10조(급여 등) ① 교수중심교원(TL형)의 보수에 관해서는 경희대학교의 교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

② 실무중심교원(PL형)의 보수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정액으로 한다.

제11조(경직) ① 특임교원의 경직은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의 학교, 병원 및 기타 사업과 동종 또는 경업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특임교원이 경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직허가신청원과 서약서를 법과대학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경직하고자 하는 업무
2. 경직의 직위와 직급
3. 경직기간
4. 경직사유
5. 기타 중요사항

③ 제2항 소정의 경직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기재한 경직연장허가신청원과 서약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다.

④ 경직(연장)허가신청원과 서약서의 양식은 법과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준용)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교원인사 관련규정 및 교내의 인사관행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임용, 그 잠정적인 지위 및 운용 등에 관한 특별규정 제13조 소정의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및 동 제15조 소정의 휴식년재는 2007. 2. 28까지 제도를 정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서식]법률실무특임교원 임용 계약서(PL형)

## 법률실무특임교원 임용 계약서(PL형)

학교법인 고황재단 이사장이 임용한 교원에 대하여 경희대학교 총장을 “甲”으로 하고 법률실무특임교원을 “乙”로 하여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 한다.

제 1조(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갑) 경희대학교 총장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제 2조(임용기간) 임용기간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0\_\_년 \_\_월 \_\_일까지 \_\_년으로 한다.

제 3조(직무 등) “갑”은 “을”을 경희대학교의 법률실무특임교원( 직위:\_\_교수 )으로 채용하며, “을”은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임용, 그 잠정적 지위 및 운용 등에 관한 특별규정 제3조 제1항 소정의 교수종류 중 PL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갑”을 위하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소속 \_\_\_\_\_ 전공영역 전임교원으로서 다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한다.

1. 강의 1강좌 이상 (주 3시간 이상)
2. 학생지도 및 상담

제 4조(보수) “갑”은 “을”에게 보수로서 연봉 금\_\_\_\_\_ 원을 지급하기로 하 고, 이를 12로 나눈 것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 5조(승진 및 재임용) “을”이 승진 및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 중 교수업적이 법 률실무특임교원의 임용, 그 잠정적 지위 및 운용 등에 관한 특별규정 제13조에 기하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야 한다.

제 6조(출근 및 체재) “을”은 경희대학교 학칙이 규정하고 있는 학기 중 담당강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 2일 이상을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제 7조(협력 및 품위유지) ① “을”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경희대학교 교육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경희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교육자로서의 품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8조(특별의무) “을”은 “갑”이 추진하는 법률사업에 적극협력하고 성실하게 참가하여야 한다.

제 9조(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 시에 “갑”이 “을”을 채용한 기준이 되었던 각종 증명서 또는 연구 실적 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로 판명된 때

2.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을”이 범한 범죄행위 등 기타 비위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희대학교의 강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퇴직예정일의 6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임용, 그 잠정적 지위 및 운용 등에 관한 특별규정 및 경희대학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증명)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 및 경희대학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甲) 경희대학교 총장(인)

(乙) 성명 : (인)

[서식]법률실무특임교원 임용 계약서(TL형)

## 법률실무특임교원 임용 계약서(TL형)

학교법인 고황재단 이사장이 임용한 교원에 대하여 경희대학교 총장을 “甲”으로 하고 법률실무특임교원을 “乙”로 하여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 한다.

제 1조(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갑) 경희대학교 총장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제 2조(임용기간) 임용기간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0\_\_년 \_\_월 \_\_일까지 \_\_년으로 한다.

제 3조(직무 등) “갑”은 “을”을 경희대학교의 법률실무특임교원( 직위:\_\_\_\_\_ 교수 )으로 채용하며, “을”은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임용, 그 잠정적 지위 및 운용 등에 관한 특별규정 제3조 제1항 소정의 교수종류 중 TL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갑”을 위하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소속 \_\_\_\_\_ 전공영역 전임교원으로서 다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한다.

1. 강의 3강좌 이상 (주9시간 이상)
2. 학생지도 및 상담
3. 교무행정업무
4.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제 4조(보수) “갑”은 “을”에게 보수로서 연봉 금\_\_\_\_\_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12로 나눈 것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 5조(승진 및 재임용) “을”이 승진 및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 중 교수업적이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임용, 그 잠정적 지위 및 운용 등에 관한 특별규정 제13조에 기하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야 한다.

제 6조(출근 및 체재) “을”은 경희대학교 학칙이 규정하고 있는 학기 중 담당강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 4일 이상을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제 7조(협력 및 품위유지) ① “을”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경희대학교 교육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경희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교육자로서의 품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8조(특별의무) “을”은 “갑”이 추진하는 법률사업에 적극협력하고 성실하게 참가하여야 한다.

제 9조(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 시에 “갑”이 “을”을 채용한 기준이 되었던 각종 증명서 또는 연구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로 판명된 때
  2.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을”이 범한 범죄행위 등 기타 비위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희대학교의 강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퇴직예정일의 6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을 실무특임교원의 임용, 그 잠정적 지위 및 운용 등에 관한 특별규정 및 경희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증명)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 및 경희대학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甲) 경희대학교 총장(인)

(乙) 성명 : (인)